



# 방송통신심의위원회

(주)진보넷

수신자 수신자참조  
(경유)

120-8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-1  
우리타워 3층 대표 이종희

제목 심의결과 통보

(02-774-455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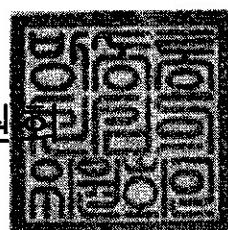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호 및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사를 통해 제공 또는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결과(심의의 결일 : 2011년 6월 29일)를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
3. 아울러 귀 사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자체없이 통보해주시기 바라며, 본 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불 임 : 심의의결 내역 1부. 끝.

이 우편물을 2011-06-30  
제 3102504007002호에 의하여  
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!  
서울양천우체국장



## 방송통신심의위원회

수신자 (주)진보넷,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

직원

06/29  
임기순 팀장

06/29  
한영호 실장

전결 06/29  
박순화

협조자

예산통제

감사

( )

시행 불법정보심의팀-831 ( 2011.06.29. ) 접수 ( )

우(158-715)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03-1(목동) 방송회관 16층 / www.kocsc.or.kr  
전화 02-3219-5132 / 전송 02-3219-5139 / 전자우편 umks@kocsc.or.kr / 공개

[붙임] 심의의결 내역

심의번호	서비스 제공자	URL	결정사유	관련법규 적용조항	심의결정	심의결과
제2011-16-186호-001	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, (주)진보넷	hcy.jinbo.net	<p>해당 정보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정보로서, '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' 홈페이지(hcy.jinbo.net)에 대하여 이용해지를 요청하는 사항임.</p> <p>한국대학총학생연합(이하 '한총련') 홈페이지는 [한총련소개], [속보], [자료실], [문화국], [개시판],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, [한총련 소개] 메뉴에는 한총련의 '강령과 규약'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, [속보] 메뉴에는 총 70,458건(2011년 6월 24일 현재)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 [자료실] 메뉴에는 문서자료 5,400여건과 선전자료 1,169건 등이 게재되어 있고, [문화국] 메뉴에는 '문예자료', '문예이론 토론방', '동아리 운영' 하위메뉴에 100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으며, [개시판] 메뉴에는 5,100 여건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음.</p> <p>경찰청 요청자료에 따르면, 한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자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(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8도495 판결, 2004. 8. 30. 선고 99도 4027 판결, 2004. 8. 30. 선고 2004도 3212 판결 등 다수)되고 있어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삭제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고발 조치(5차)된 바 있고, 한총련 홈페이지에는 노동신문, 구국전선, 우라민족끼리 등 북한체제 선전사이트에 게시된 수천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</p> <p>해당 정보는 김일성, 김정일 부자를 미화, 친양하고,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, 주장을 선전, 선동하는 내용으로서, 경찰청의 요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, 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'이용해지'의 시정요구로 의결함.</p>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8호, 「국가보안법」 제7조	시정요구	이용해지

2011. 6. 30  
1580554